플랫폼 경쟁의 시사점 - 시장지배력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세미나 2017. 8. 31.

주 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 2000년대 초반부터 Rochet/Tirole/Evans/Schmalensee 등 경제학자들이 다면(양면)시장/플랫폼 경제이론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경쟁법 사건에서 시사점은 모호한 실정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단독행위와 관련한 ① Tbroad강서방송(= 케이블방송사업자) 사건, ② eBayGmarket (EBGM = 온라인거래중개업자) I 사건, ③ EBGM II 사건, ④ NHN (Naver = 인터넷포털 사업자) 사건 등 4개 사건에서 각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된 단독행위를 시장지배력 남용이라고 하였음
- 위 4개 사건 모두 '관련시장(relevant market)'과 관련한 복잡한 쟁점이 있는데, 여하튼 대법원은 위 4개 사건 모두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음 (공정위 패소)
- 본고는 위 4개 사건을 '플랫폼 경쟁' 차원에서 조망함

II. 문제된 행위 및 관련법령(독점규제법)

사건	문제된 행위	공정위의 법적용
Tbroad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홈쇼핑 인기채널인 8번 채널 사용료 와 관련하여 우리홈쇼핑은 3천만 원제 시, 현대홈쇼핑은 9천만원 제시 → 현 대홈쇼핑에게 8번 배정, 우리홈쇼핑 에게는 18번 배정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불이익강제 (제3조의2 제1항 제3호)
EBGM I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자신의 경쟁자인 '엠플온라인'과 거래하던 7개 소규모 판매업체에게 eBayGmarket 웹사이트에서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경쟁자 웹사이트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 행위등	부당한 배타조건 부거래/경쟁자배 제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사건	문제된 행위	공정위의 법적용
EBGM II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8677 판 결 – 심리불속행 기각)	EBGM I과 유사함	부당한 배타조건부거 래/경쟁자배제 (제3조의2 제1항 제5 호 전단)
Naver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판도라TV 등 9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공급업체'와 원고의 검색 엔진을 통해 이들 업체가 제공하 는 동영상이 쉽게 검색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동영상콘텐츠 색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무료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로 검 색된 동영상에 원고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둠	부당한 사업활동방해 /불이익강제 (제3조의2 제1항 제3 호)

III. 관련시장

1. 사례

사건	양면/다면시장	공정위가 정한 관련시장
Tbroad	(A)시청자 (B)채널 수요 사업자	(A) 서울 강서지역 케이블 방송프로그램 서비스 시장(점유율 100%) (B) 방송프로그램 송출 서비스 시장
EBGM II	(A) 판매 사업자 (B) 구매 소비자	- 이른바 '오픈마켓 판매시장'
Naver	(A)인터넷 무료 이용자 (B) 각종 유료서비스 시 장	(A) 인터넷포털(1C-4S) 서비스 (Google 제외) 시장 (총 유료 서비스 매출액기준 점유율 48%) (B) 온라인 광고시장 및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시장

2. 관련시장 v. 양면시장

- 경쟁법상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은 시장지배력 또는 경쟁제한효과 존부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 (→ 양면시장과 구별)
- 그런데 공정위는 Tbroad 사건/Naver 사건에서 양면시장 중에서 문제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어느 하나의 시장(A)을 '관련시장'으로 정하여 시장지배력을 인정한 뒤 → 그 시장(A)의 지배력이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다른 시장(B)'으로 전이되어 남용되었다고 함
- 대법원은 **Tbroad 사건**에서 공정위의 관련시장 획정법이 잘못되었다고 처음으로 지적

3. 교차네트워크효과와 SSNIP 테스트 문제

- 관련시장 획정법으로 널리 쓰이는 SSNIP 테스트는 교차네트워크효 과(cross network effect)가 없는 단면시장을 전제로 개발된 것임
- 그런데 **EBGM I, II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있는 온라인거래 중개시장(판매자의 증감과 구매자의 증감이 상호 영향)임
 - ✓ 대법원은 공정위의 '구술' SSNIP 테스트 (판매자 수수료 인상해도 대체 판로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에 의한 관련시장 획정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움
- 교차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는 플랫폼의 경우 SSNIP 테스트를 적용하면 수요대체성을 과소하게 평가하여 관련시장이 너무 좁게 획정될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4. 문제점

- 관련시장 획정 문제는 그 자체로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실제 사건에서 SSNIP 테스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 Cf. 관련시장 획정 불가론/무용론 (Louis Kaplow)
- 여기에 플랫폼 이론이 가담하면서 복잡한 문제가 더 복잡해짐
 - ✓ Naver/EBGM 사건에서 공정위는 양면시장이론만 언급하였을 뿐 관련시장을 제대로 획정하지 못했음
 - ✓ Naver 사건에서 관련시장 문제 때문에 대법원은 5년이나 심리하였으나 결국 판단회피
- 실제 사건에서 '교차네트워크효과'를 어떻게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획 정해야 하는지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

IV.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

1. 시장지배력 추정

- 한국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1)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인 사업자 또는 (2)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면 각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단 점유율 10% 미만 사업자 는 제외)
 - ✓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점유율을 합산
 - ✓ [예시] 어떤 관련시장에서 사업자 A의 점유율 30%, B 30%, C 9%, D 6% (C와 D 계열사 관계) 경우 → A, B, C(= 15%) 각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
- 낮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력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음
 - ✓ EBGM I 사건에서 수수료 수입 기준 점유율 34%로 시장지배력 인정 (추정 복멸 불인정)

2. 경쟁제한성

- 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사업활동방해/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으로서 '경쟁제한효과' (가격인상, 생산량감소, 혁신저해, 다양성 감소등) 증명을 요구
- 앞서 언급한 4개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정위 패소

3. '플랫폼 경쟁'의 시사점

- 2014년 11월 선고된 Naver 판결에서 대법원은 5년간 심리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단순 수긍 (→ 복잡한 관련시장 문제를 회피하고 경쟁제한성 부정)
 - ✓ Cf. 한달 전인 2014년 10월 중국 대법원은 $Qihoo\ 360\ v$. Tencent 사건 (인터넷메신저와 보안프로그램 번들링)에서 '인터 넷 메시징' 시장에서 Tencent 점유율 80%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경쟁/동태적(dynamic) 경쟁을 이유로 시장지배력 부인
- Naver/EBGK 사건의 경우 공정위 관련시장 획정이 옳다고 가정해도 점유율 40% 대 →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므로 시장지배력 인정하기 어려움

4. 4개 사건에서 플랫폼경쟁 상황

사건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시장	플랫폼 경쟁
Tbroad	홈쇼핑업체의 판매 시장	유력 경쟁자 존재
		(인터넷TV, 인터넷포털, 위성 TV 사업자)
EBGM I	판매자의 온라인 판매시장	유력 경쟁자 존재
		(11번가, CJ mall, GS shop)
EBGM II		
Naver	CP의 온라인 광고서비스 판매 시 장	유력 경쟁자 존재
		(Daum, Facebook, Google)

V. 결론

- 플랫폼이론이 실제 사건에서 독점규제법 위반 여부 판단에 주는 시사점은 지한적 (→ 관련시장 획정시 교차네트워크효과 고려 필요, 어떤 시장에서 원가 미만의 낮은 가격이 약탈적 가격설정이 아니라는 정도)
- 인터넷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시장' 문제를 전통적 방법(SSNIP 테스트)으로 접근하든 양면시장이론(교차네트워크효과 등)을 고려하여 접근하든 자칫 미궁에 빠질 우려
 - ✓ Cf. Naver 사건
- 인터넷기반 플랫폼 사업의 경우 '플랫폼/동태적 경쟁'을 고려하여 시장지 배력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 Cf. Qihoo 360 v. Tencent
- 여하튼 위법성 인정은 추상적 이론/가설/시나리오가 아니라 구체적 증거로!

감사합니다